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24
----------	--------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에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입학준비금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학준비금 시행으로 인한 기존 조례 명칭·정의 등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입학준비금 미지원 타 시·군·구 소재 학교 진학 학생 지원 근거 마련
(안 제3조제2호)

다. 효율적인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안 제5조제2항)

라.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 입학준비금 지원 협력 근거 마련 (안 제7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1. 10. 7. ~ 10. 27.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1.1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학습용 기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금액)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소속 학교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의 학교 배정 여부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기관과 합의

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1)서울특별시 마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 (2)서울특별시 마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지원금액) 및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20년도 서울시 복지대타협 TF 추진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입학준비금 전면 시행에 의거, 마포구 관내 중·고등학교 연도별 입학생 수에 따른 중·고등학생 입학준비금을 분담 지원액 (교육청비 50%, 시비 30%, 구비 20%)을 반영 하였으며, '21년도 서울시 복지대타협 TF 추진에 따라, 초등 입학준비금 시행으로 마포구 관내 초등학교 연도별 입학생 수를 반영하여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을 분담 지원(교육청비 40%, 시비 30%, 구비 30%)반영하였음.

※ 초등 20만원(30% 분담) 지원, 중·고등 30만원(20% 분담) 지원 기준

나. 마포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다. 비용추계기간 : 2022. 1. ~ 2026. 12. (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비 보조금	-	-	-	-	-	-
	구비 보조금	414,739	427,742	449,129	471,585	495,164	2,258,359
	소계(b)	414,739	427,742	449,129	471,585	495,164	2,258,359
□ 총 비용(a-b)		414,739	427,742	449,129	471,585	495,164	2,258,359

※ 연도별 1학년 입학생 인원 추이 변화에 따라 분담액 증감될 수 있음

4. 재원조달 방안

가. 마포구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분담액 지원

5. 덧붙이는 의견

가.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오재은 (☎8594)